

비씨카드 특별할부(무이자) 특약서

가맹점 명 : (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
와/과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함)는 가맹점 약관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선택	적용기준	번호 기재
☐	가맹점번호	

제1조(목적)

이 특약은 “비씨카드” 및 “비씨카드”가 사전에 신청서,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고지한 회원사가 발급한 신용카드(이하 “대상카드”라 한다)로 “가맹점”의 물품 및 용역을 할부로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부수수료 부담 주체를 회원이 아닌 가맹점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내용)

- 본 특약에 따라 할부매출 발생 시, 회원에 대신하여 “가맹점”이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는 할부 개월수는 “신청서” 상 가맹점이 기재 한 개월 수에 한한다. “가맹점”이 “신청서” 상 지정한 할부거래 개월 수 이외 할부거래 건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회원이 할부 수수료를 부담한다.
- 할부 개월 수 별 특별할부 수수료율은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 특별할부 수수료는 각 특별할부 매출표 금액에 특별할부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비씨카드”는 “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용판매 대금 입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특별할부 매출과 관련하여 특정 일자의 취소 매출액이 정상 승인 된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역환 발생) “비씨카드”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취소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 “비씨카드”는 “가맹점”에 지급할 잔액이 없는 경우 “가맹점”은 “비씨카드”가 지정한 역환대금 환입용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회원의 할부선결제 혹은 선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가맹점”이 기 지급한 할부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 회원의 할부금이 2개월이상 청구된 할부거래가 취소된 경우, “비씨카드”는 “가맹점”이 지급한 특별할부수수료를 “가맹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신용판매 범위)

본 특약에서 정하는 범위는 “비씨카드”의 회원에게 “가맹점”이 취급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데 한한다.

제4조(준수사항)

- “가맹점”은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가맹점”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비씨카드” 또는 “회원”에 이를 배상
- “비씨카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 약관 또는 제1항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비씨카드”가 지급할 신용판매대금에서 “비씨카드”의 손해에 대한 변제·충당 및 가맹점 계약의 해지 등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회원과 분쟁)

“비씨카드”가 매출전표 매입을 하고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회원의 이익제기 (할부거래 신청 사실 불안정, 물품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인한 취소 요청, 금액의 상이) 또는 할부거래 신청 과정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의 책임하에 있으며, 만약 “비씨카드”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맹점”은 이를 즉각 배상함은 물론 “비씨카드”가 지급할 대금 중에서 차감 후 지급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

제6조(손해 배상)

- 일방이 본 특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또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 당사자가 이를 배상한다.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행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부도 처리)

“비씨카드”는 “가맹점”으로부터 접수한 매출표(매출 내역서)의 회원번호 오류, 분실·도난 및 거래정지, 할부기간 오류, 본 특약 및 가맹점 약관 위반, 관계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대금결제 가 불가한 건들은 반송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특약의 유효기간)

본 특약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특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특약의 변경 및 해지)

- 이 특약의 변경은 “가맹점”과 “비씨카드”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 사전 고지한 회원사가 변동되는 경우 “비씨카드”는 가맹점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보한다.
- “가맹점”, “비씨카드” 중 어느 일방이 이 특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고 일방의 서면 통지만으로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본 특약은 “비씨카드”가맹점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씨카드” 가맹점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비씨카드”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약서는 카드사 보관용 1부만 제출한다.

작성일

년

월

일

<가맹점>

사업장 주소

가맹점명(상호)

대표자 성명

(인)

<비씨카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비씨카드㈜

비씨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우



비씨카드 특별할부(무이자) 특약서

가맹점 명 : (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
와/과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함)는 가맹점 약관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선택	적용기준	번호 기재
☐	가맹점번호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비씨카드” 및 “비씨카드”가 사전에 신청서,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고지한 회원사가 발급한 신용카드(이하 “대상카드”라 한다)로
“가맹점”의 물품 및 용역을 할부로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부수수료
부담 주체를 회원이 아닌 가맹점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내용)

- 본 특약에 따라 할부매출 발생 시, 회원에 대신하여 “가맹점”이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는 할부 개월수는 “신청서” 상 가맹점이 기재 한 개월 수에 한한다.
“가맹점”이 “신청서” 상 지정한 할부거래 개월 수 이외 할부거래 건의 경우
기준과 동일하게 회원이 할부 수수료를 부담한다.
- 할부 개월 수 별 특별할부 수수료율은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 특별할부 수수료는 각 특별할부 매출표 금액에 특별할부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비씨카드”는 “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용판매 대금 입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특별할부 매출과 관련하여 특정 일자의 취소 매출액이 정상 승인 된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역환 발생) “비씨카드”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취소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 “비씨카드”는 “가맹점”에 지급할 잔액이 없는 경우 “가맹점”은 “비씨카드”가
지정한 역환대금 환입용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회원의 할부선결제 혹은 선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가맹점”이 기 지급한
할부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 회원의 할부금이 2개월이상 청구된 할부거래가 취소된 경우, “비씨카드”는
“가맹점”이 지급한 특별할부수수료를 “가맹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신용판매 범위)

본 특약에서 정하는 범위는 “비씨카드”의 회원에게 “가맹점”이 취급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데 한한다.

제4조 (준수사항)

- “가맹점”은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가맹점”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비씨카드” 또는 “회원”에 이를 배상
- “비씨카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 약관 또는 제1항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비씨카드”가 지급할 신용판매대금에서 “비씨카드”의
손해에 대한 변제·충당 및 가맹점 계약의 해지 등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회원과의 분쟁)

“비씨카드”가 매출전표 매입을 하고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회원의 이익제기
(할부거래 신청 사실 불안정, 물품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인한 취소 요청, 금액의
상이) 또는 할부거래 신청 과정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의 책임하에 있으며, 만약 “비씨카드”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맹점”은 이를 즉각 배상함은 물론 “비씨카드”가 지급할 대금
중에서 차감 후 지급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

제6조 (손해 배상)

- 일방이 본 특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또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 당사자가 이를 배상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행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부도 처리)

“비씨카드”는 “가맹점”으로부터 접수한 매출표(매출 내역서)의 회원번호 오류,
분실·도난 및 거래정지, 할부기간 오류, 본 특약 및 가맹점 약관 위반, 관계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대금결제 가 불가한 건들은 반송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특약의 유효기간)

본 특약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특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특약의 변경 및 해지)

- 이 특약의 변경은 “가맹점”과 “비씨카드”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 사전 고지한 회원사가 변동되는 경우 “비씨카드”는 가맹점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보한다.
- “가맹점”, “비씨카드” 중 어느 일방이 이 특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고 일방의 서면
통지만으로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본 특약은 “비씨카드”가맹점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씨카드” 가맹점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비씨카드”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약서는 카드사 보관용 1부만 제출한다.

작성일	년	월	일
-----	---	---	---

〈가맹점〉
사업장 주소
가맹점명(상호)
대표자 성명

(인)

〈비씨카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비씨카드㈜
비씨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우

